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-77호

- 2026년도 제1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-

추 가 합 격 자 공 고

2026. 6. 20.(토) 시행한 2026년도 제1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추가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1일

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

1 추가합격자 : 3명

▣ 행정(일반행정_일반)

울릉군의회 14104276 - 이상 1명 -

▣ 농업(일반농업_일반)

청도군 14500220 -이상 1명-

▣ 방송통신(통신기술)

경상북도의회 14850097 -이상 1명-

2 임용후보자 등록

가. 기 간 : 2026. 10. 26.(월) [1일]

나. 장 소 : 임용예정기관 인사담당부서〔연락처 별첨〕

다. 등록방법

○ 최종합격자는 위 기간 중 제출서류를 갖추어 임용예정기관 인사부서에 **직접 방문하여 임용후보자 등록**을 하여야 합니다.

○ 임용예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일(2026. 10. 21.)로부터 15일 이내(2026. 11. 5.)의 기간 중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라. 등록(제출) 서류

①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(임용예정기관에 비치 / **[붙임1]** 참조)

② 기본증명서(상세) 1부(2026. 10. 21. 이후 발급분)

※ 일반/상세/특정증명서 중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상세증명서 제출

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(2026. 10. 21. 이후 발급분)

④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※ 제1국민역 및 실역미필 보충역은 병적증명서 제출

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(**[붙임2]** 참조)

※ 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공무원용으로 발급하며, 검사 시 사진 2매 필요(발급기간 2일 정도 소요)

※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 개정('26. 6. 16.)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 항목이 포함됨

※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신체검사서는 재발급하여 제출 가능(마약류 검사 유효기간은 4개월)

⑥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

⑦ 경력증명서 1부(공무원 경력합산에 유효한 경력 / 해당자에 한함)

⑧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(원본 지참 / 해당자에 한함)

⑨ 사진 5매

- 사진 규격(3.0cm × 4.0cm) 4매
- 사진 규격(5.0cm × 7.0cm) 1매

3 유의사항

○ 최종합격자가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임용포기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○ 최종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4 기타사항

○ 임용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(서류작성 등)과 임용시기 등 향후 일정에 관하여는 임용예정기관 인사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＊ 임용예정기관(시·군) 인사담당부서 - 연락처 ＊

기관명	전화번호	기관명	전화번호
청도군	054-370-6083	경상북도의회	054-880-5093
울릉군의회	054-790-6403		

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복지과 인재채용팀(☎ 054-880-4583) 및 경상북도 누리집 (https://www.gb.go.kr) 시험정보-질의/응답(Q&A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[붙임1]

[별지 제4호서식]

임용후보자등록원서(원본)

※등록번호	제 회 번		③ 응시연도 및 회수	()년도 제 회	
※ 급	직		응시지구(기호) 응시번호	지구	번
			직급별	급 직	

① 성 명	(한글)	② 희망지역	※ 등록심사	
	(한문)	제1지역 시군	사진대조	서류심사
	(영문)	제2지역 시군	㊞	㊞
④ 주 소			(사진부착)	
⑤ 연락처	전화번호 :			
	휴대폰 :			
⑥ 병 역	○ 병역필 / ○ 면제 / ○ 미필 / ○ 여성			

⑦ 학 력

부터	까지	학 력	전공·부문·과목

⑧ 자격면허		⑨ 상 벌	
연월일	종 별	연월일	사 항

⑩ 경 력

부터	까지	경력사항	발령청

(※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)

⑪ 비상연락처

관계	성 명	연락처	

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,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,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.

년 월 일

출원자 (인)

(임용권자) 귀하

[붙임2]

■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[별지 제7호 서식]

(앞쪽)

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						사 진 (3.5㎝ × 4.5㎝) ※ 압인 또는 계인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		
⑥ 검사 시						
⑦ 재사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	

검 사 내 용

키	cm		체 중	kg	
허리둘레	cm		혈 압		
(교정)시력	좌: () 우: ()	색 신 (색 각)		(교정)청력	좌: () 우: ()
종 양 질 환			이비인후질환		
호 흡 기 질 환			심 혈 관 질 환		
소 화 기 질 환 (간 질 환 포함)			신장/비뇨기계질환		
내 분 비 질 환			혈 액 질 환		
신 경 질 환			피 부 질 환		
근골격계 질환			안 질 환		
정 신 질 환			흉부X선 검사		
기 타					

마약류 검사

필로폰		대마		케타민		엑스터시		코카인		아편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 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 합격 여부	[]합 격 []판 정 보 류	합격 사유	
판정보류 사유 (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)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 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(마약류 검사는 판정일부터 4개월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 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 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[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), 운전면허증, 여권 등]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 ※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[검진기관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: 도장을 눌러 찍음) 또는 계인(걸침도장)을 해야 합니다.
2. "검사 내용"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가.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.

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판정보류"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.

 ※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 나.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.
 - (작성 예시) 임산부인 경우 "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"라고 적습니다.

 다. 규정된 마약류 항목을 모두 검사하여 그 결과를 "양성" 또는 "음성"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.

3.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
 ※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.

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
 - "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"에 해당하지 않음
 -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
 (예시: "만성골수성백혈병"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)

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-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(예시: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)

 ※ 응시자의 질환이 "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"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.

4. 검사 내용 중 "마약류 검사" 항목만 제외하거나, 해당 항목만 검사하여 판정한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5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